

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 보고

□ 개 요

○ 관련근거: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의3

제55조의3(조례상보고 등) 시장 및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보고의 건으로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정관변경 보고

○ 변경 사유

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기관 설립 목적 및 명칭 변경
- 2022년 결산에 따른 기본재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기본재산 목록표 변경
- 직제 및 정원규정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정원표 변경

○ 변경 내용

①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

- 제1조(목적): 기관 설립 목적 변경

현 행
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「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, 「지방자치법」, 「민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.03.20, 2017.03.22>

개 정 (안)
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「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, 「지방자치법」, 「민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재단법인 <u>서울경제진흥원</u> 설립 및 운영 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<u>서울특별시의 경제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창업 촉진, 기업 성장, 산업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 <개정 2014.03.20., 2017.03.22., 2023.04.07>

- 제2조(명칭): 서울경제진흥원으로 변경

현 행	개 정 (안)
제2조(명칭) 법인은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 <개정 2014.03.20> <개정 2014.08.19>	제2조(명칭) 법인은 재단법인 <u>서울경제진흥원</u> 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 <개정 2014.03.20> <개정 2014.08.19., 2023.04.07>

- 제10조(임원의 임기) 제1항: 임원의 연임 기간 3년 → 1년 단위

현 행	개 정 (안)
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노동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노동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 <개정2015.5.26., 2016.10.28., 2018.3.29., 2019.06.27., 2020.12.29>	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<u>1년 단위</u> 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노동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노동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 <개정2015.5.26., 2016.10.28., 2018.3.29., 2019.06.27., 2020.12.29., 2023.04.07>

② 기본재산 목록표 변경

- 2022년 결산에 따른 기본재산 변동사항 반영

현 행			개 정 (안)		
〈별표1. 기본재산 목록〉			〈별표1. 기본재산 목록〉		
(단위: 천원)			(단위: 천원)		
구분	내역	금액	구분	내역	금액
부동산	서울특별시 출연금	15,000,000	부동산	서울특별시 출연금	15,000,000
	우리은행 출연금	500,000		우리은행 출연금	500,000
	중소기업중앙회 출연금	100,000		중소기업중앙회 출연금	100,000
	이익잉여금 등	37,835,823		이익잉여금 등	37,835,823
서울산업진흥기금	이익잉여금 등	79,852,439	서울산업진흥기금	이익잉여금 등 (<u>펀드출자 회수금 등</u>)	<u>85,070,904</u>
계		133,288,262	계		<u>138,506,727</u>

③ 직제 및 정원규정 변경사항 반영

- 시설서비스직군의 정원 내 인력 포함을 통한 조직 운영 및 관리 효율화
- 서울시장 공약사항 및 서울비전 2030 핵심과제 수행을 위한 정원 증원 등

현 행								
제5조(정원) ①재단의 정원은 [별표 제1호]와 같다.								
〈별표 1〉								
구 분	계	상근임원	1급	2급	3급	4급	5급	6급~7급
상근임원 (대표이사/상임이사)	3	3	-	-	-	-	-	-
정규직	345	-	6	12	40	78	95	114

개 정 (안)

제5조(정원) ①재단의 정원은 [별표 제1호]와 같다.

〈별표 1〉

구 분	계	상근 임원	일반직						시설 서비스직
			1급	2급	3급	4급	5급	6급~7급	
상근임원 (대표이사/상임이사)	3	3	-	-	-	-	-	-	-
정규직	<u>522</u>	-	<u>7</u>	12	40	<u>80</u>	<u>96</u>	<u>117</u>	<u>170</u>

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(안)

서울경제진흥원 정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「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, 「지방자치법」, 「민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제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창업 촉진, 기업 성장, 산업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4.03.20., 2017.3.22., 2023.04.07.)

제2조(명칭) 법인은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 (개정 2014.03.20., 2014.08.19., 2023.04.07)

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노동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노동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 (개정2015.5.26., 2016.10.28., 2018.3.29., 2019.06.27., 2020.12.29., 2023.04.07.)

〈별표1. 기본재산 목록〉

(단위: 천원)

구분	내역	금액
부동산	서울특별시 출연금	15,000,000
	우리은행 출연금	500,000
	중소기업중앙회 출연금	100,000
	이익잉여금 등	37,835,823
서울산업진흥기금	이익잉여금 등 (<u>펀드출자 회수금 등</u>)	<u>85,070,904</u>
계		<u>138,506,727</u>

〈별표3. 정원표〉

정 원 표

구분	계	상근 임원	일반직						시설 서비스직
			1급	2급	3급	4급	5급	6급~7급	
상근임원 (대표이사/상임이사)	3	3	-	-	-	-	-	-	-
정규직	<u>522</u>	-	<u>7</u>	12	40	<u>80</u>	<u>96</u>	<u>117</u>	<u>170</u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「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, 「지방자치법」, 「민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중소기업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.03.20, 2017.03.22></p>	<p>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「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, 「지방자치법」, 「민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재단법인 <u>서울경제진흥원</u> 설립 및 운영 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<u>서울특별시의 경제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창업 촉진, 기업 성장, 산업 육성에</u>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.03.20., 2017.03.22., 2023.04.07>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(명칭) 법인은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 <개정 2014.03.20> <개정 2014.08.19></p>	<p>제2조(명칭) 법인은 재단법인 <u>서울경제진흥원</u>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 <개정 2014.03.20> <개정 2014.08.19., 2023.04.07>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노동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노동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 <개정2015.5.26., 2016.10.28., 2018.3.29., 2019.06.27., 2020.12.29></p>	<p>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<u>1년 단위로</u>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노동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노동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 <개정2015.5.26., 2016.10.28., 2018.3.29., 2019.06.27., 2020.12.29., 2023.04.07>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별표1. 기본재산 목록> (단위: 천원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내역</th> <th>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4">부동산</td> <td>서울특별시 출연금</td> <td>15,000,000</td> </tr> <tr> <td>우리은행 출연금</td> <td>500,000</td> </tr> <tr> <td>중소기업중앙회 출연금</td> <td>100,000</td> </tr> <tr> <td>이익잉여금 등</td> <td>37,835,823</td> </tr> <tr> <td>서울산업진흥기금</td> <td>이익잉여금 등</td> <td>79,852,439</td> </tr> <tr> <td>계</td> <td></td> <td>133,288,262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내역	금액	부동산	서울특별시 출연금	15,000,000	우리은행 출연금	500,000	중소기업중앙회 출연금	100,000	이익잉여금 등	37,835,823	서울산업진흥기금	이익잉여금 등	79,852,439	계		133,288,262	<p><별표1. 기본재산 목록> (단위: 천원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내역</th> <th>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4">부동산</td> <td>서울특별시 출연금</td> <td>15,000,000</td> </tr> <tr> <td>우리은행 출연금</td> <td>500,000</td> </tr> <tr> <td>중소기업중앙회 출연금</td> <td>100,000</td> </tr> <tr> <td>이익잉여금 등</td> <td>37,835,823</td> </tr> <tr> <td>서울산업진흥기금</td> <td>이익잉여금 등 (<u>펀드출자 회수금 등</u>)</td> <td><u>85,070,904</u></td> </tr> <tr> <td>계</td> <td></td> <td><u>138,506,727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내역	금액	부동산	서울특별시 출연금	15,000,000	우리은행 출연금	500,000	중소기업중앙회 출연금	100,000	이익잉여금 등	37,835,823	서울산업진흥기금	이익잉여금 등 (<u>펀드출자 회수금 등</u>)	<u>85,070,904</u>	계		<u>138,506,727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내역	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동산	서울특별시 출연금	15,0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우리은행 출연금	5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중소기업중앙회 출연금	1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이익잉여금 등	37,835,82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산업진흥기금	이익잉여금 등	79,852,43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		133,288,26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내역	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동산	서울특별시 출연금	15,0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우리은행 출연금	5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중소기업중앙회 출연금	1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이익잉여금 등	37,835,82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산업진흥기금	이익잉여금 등 (<u>펀드출자 회수금 등</u>)	<u>85,070,904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		<u>138,506,727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별표3. 정원표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 원 표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계</th> <th>상근임원</th> <th>1급</th> <th>2급</th> <th>3급</th> <th>4급</th> <th>5급</th> <th>6급~7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상근임원 (대표이사/상임이사)</td> <td>3</td> <td>3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정규직</td> <td>330</td> <td>-</td> <td>6</td> <td>12</td> <td>38</td> <td>73</td> <td>92</td> <td>109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계	상근임원	1급	2급	3급	4급	5급	6급~7급	상근임원 (대표이사/상임이사)	3	3	-	-	-	-	-	-	정규직	330	-	6	12	38	73	92	109	<p><별표3. 정원표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 원 표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</th> <th rowspan="2">계</th> <th rowspan="2">상근 임원</th> <th colspan="6">일반직</th> <th rowspan="2">시설 서비스직</th> </tr> <tr> <th>1급</th> <th>2급</th> <th>3급</th> <th>4급</th> <th>5급</th> <th>6급~7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상근임원 (대표이사/상임이사)</td> <td>3</td> <td>3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정규직</td> <td><u>522</u></td> <td>-</td> <td><u>7</u></td> <td>12</td> <td>40</td> <td><u>80</u></td> <td><u>96</u></td> <td><u>117</u></td> <td><u>170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계	상근 임원	일반직						시설 서비스직	1급	2급	3급	4급	5급	6급~7급	상근임원 (대표이사/상임이사)	3	3	-	-	-	-	-	-	-	정규직	<u>522</u>	-	<u>7</u>	12	40	<u>80</u>	<u>96</u>	<u>117</u>	<u>170</u>
구 분	계	상근임원	1급	2급	3급	4급	5급	6급~7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상근임원 (대표이사/상임이사)	3	3	-	-	-	-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규직	330	-	6	12	38	73	92	10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계	상근 임원	일반직						시설 서비스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1급	2급	3급	4급	5급	6급~7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상근임원 (대표이사/상임이사)	3	3	-	-	-	-	-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규직	<u>522</u>	-	<u>7</u>	12	40	<u>80</u>	<u>96</u>	<u>117</u>	<u>170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